

2023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정 책 관

목 차

I 지방세기본법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목 명확화(법§8)	7
2.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법§24)	9
3.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법§38)	11
4.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법§38)	13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42)	18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법§50)	22
7.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법§56)	24
8.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총당(법§63)	27
9.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신설(법§83)	33
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법§80의2)	37
1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법§89)	40
1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법§91)	42
13.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법§96)	44
14.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정(법§146, 법§151조의2)	44
15.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및 운영 효율화(법§147, 영§86의2)	48

II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영§2)	57
2.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요건 재설계(영§24)	63
3. 상대방과 파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하는 특수관계인 범위(영§51)	65
4.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및 전자송달 철회 예외사유 신설(영§14)	67
5.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규정 인용조문 정비(영§77)	72
6. 외국인 관련 제출 과세자료 확대 등(영 별표3)	75
7. 경매로 인한 취득세 관련 제출 과세자료 확대(영 별표3)	77
8.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칙 별표10)	78

I.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목 분류 명확화 (법§8)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1항3항) 특광역시세(9개), 구세(2개) ☐ (2항4항) 도세(6개), 시·군세(5개) ☐ (5항) 특별자치도세(11개)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1~4항) (좌 동) ☐ (5항) (좌 동) - 다만,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u>중전의 도세·시군세 세목에 따름</u>

□ 개정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6.11.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 기존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 분류 체계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단서 조항 신설 필요
- 지방자치법 §2①에 따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 특별자치도는 중전의 도세를, 특별자치도내 시·군은 중전 시·군세를 적용하는 단서 조항(법 §8⑤) 신설

《 현행 자치단체 세목 분류 (지방세기본법 §8) 》

- ┌ 도세(6종, 법 §8②)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시·군세(5종, 법 §8③)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특별자치시·도세(11종 : §8⑤) : 지방세 전 세목

□ 적용 요령

- 시·군이 존치하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전의 도세 및 시·군세와 동일하게 세목체계를 유지하여 운영

참고 1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 ⑤ (생략) <신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군세를 해당 시·군의 시·군세로 한다.

2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법§24)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고·납부·징수 등 기한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 그 다음날	☐ 신고·납부·징수 등 기한 명확화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u>대체</u> <u>공휴일</u> , 근로자의 날 → 그 다음날

□ 개정 내용

-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납부, 징수 등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법§24)
- 기한의 특례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추가하여 대체공휴일 다음날까지 납세자가 신고·납부토록 규정 명확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2021.7.7.제정, 2022.1.1. 시행)

-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공휴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에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대체공휴일 신설

□ 적용 요령

- 기한의 특례 중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참고 1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u>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 ----- 1. <u>토요일 및 일요일</u>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공휴일 및 대체공휴일</u>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근로자의 날</u>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 10년	☐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 10년

*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지방세법§7(12))
(서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보아 차등 적용(지방세법§7(12))

□ 개정 내용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그 사유 및 세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0년으로 규정(법§38①2가)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법 §38①)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 포탈 등을 한 경우: 10년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0년
 - 나.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10년
 - 다. 타인 명의로 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실권리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 부담부중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중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

부담부증여	=	증 여 ▪ 제척기간 10년 ▪ 무상세율(3.5%)	+	채무액 ▪ 제척기간 10년 ▪ 유상세율(1~4%)
-------	---	--	---	--

※ 국세의 경우, 부담주증여에 대해 증여.채무를 구분하여 세목을 달리 적용(증여: 증여세, 채무: 소득세)하더라도 제척기간은 동일하게 적용

☐ 적용 요령

-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 ----- ----- ----- . ----- ----- ----- ----- -----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② ~ ⑤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4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법§38)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부과가능	□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좌동) ○ <u>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u>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개정 내용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판결 등*으로 사업의 명의 대여 등이 확인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토록 규정(법§38③)

* 행정소송,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판결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대법원 2014두43110(2018.3.22.)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음

⇒ 명의수탁자의 기 납부 취득세를 환급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 부과제척기간 경과시 취득세 과세불가

☐ 적용 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등으로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

참고 1 개정 조문안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u>경정결정</u>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 ----- ----- ----- ----- ----- ----- ----- <u>경정</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u>경정결정</u>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참고2 명의신탁과 지방세

□ 명의신탁 제도 개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2)
 - (제외) ①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임(§4)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님

 - (특례) 중증배우자·종교단체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가 아님(§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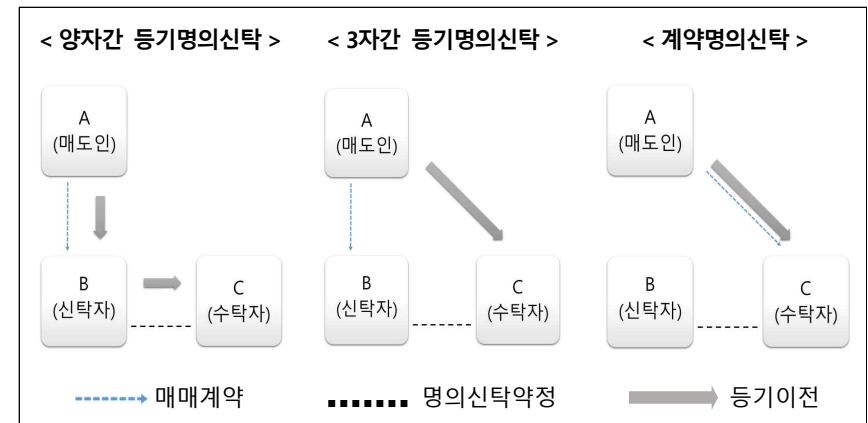
□ 명의신탁의 유형

- (등기명의 신탁)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는 관여하지 않고, 등기명의만 이전받는 형태
 -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
 - (3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명의로 이전

- (계약명의 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이전

- (매도자가 명의신탁약정 인지-악의) 매도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으면 명의수탁자의 취득을 부정하므로 물권변동의 효력 없음
- (매도자가 명의신탁약정 인지X-선의) 매도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면 명의수탁자의 취득을 인정하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효

< 명의신탁의 유형별 흐름도 >



□ 명의신탁에 따른 지방세 판례

- 등기명의 신탁 관련
 - (대법원 2014두43110)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음
 - (대법원 2012두1174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는 당초 잔금지급 시 부동산을 취득한 거이고 이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 (대법원 2013두3078)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이후 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대법원 2015두52296) 피상속인의 2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명의신탁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 계약명의 신탁 관련

- (대법원 2012두14804)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 (대법원 2015두39026)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안 법§42③)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 상속인 중에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	☐ 납세의무의 승계 비율 개선 ○ (좌동) ○ <u>민법상 유류분을 받은 자를 추가</u>

□ 개정 내용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법§42③)
- 상속 납부액은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계하도록 하고,
 - * 민법상 법정상속, 대습상속, 유언에 의한 분할상속 등(§1009-1010, §1012-1013)
 - 그 사유에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추가
 - ※ (기존) 상속인 중에 ① 수유자 또는 ② 상속포기자(민법 §1019①)가 있거나 ③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로 규정

□ 적용 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유류분을 청구하여 재산 취득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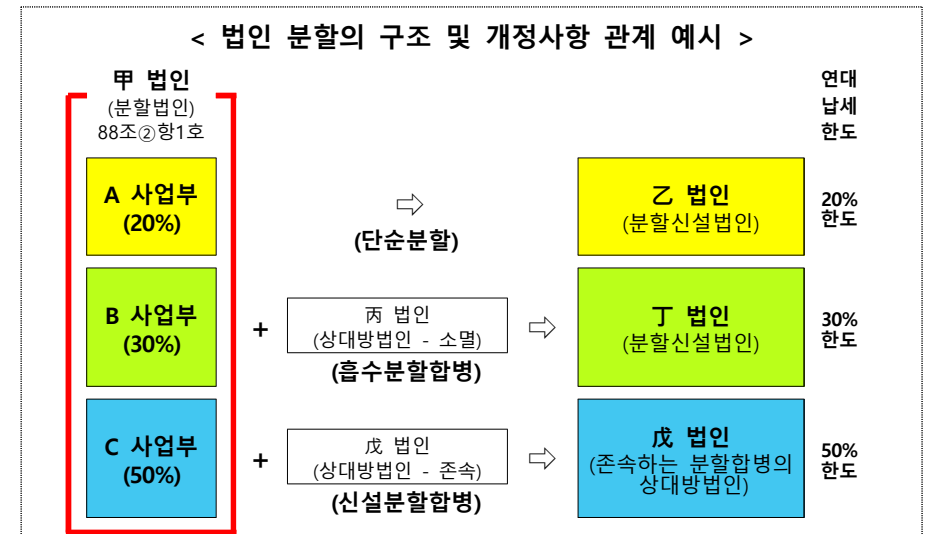
참고 1 개정 조문안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② (생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 <u>--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u> ----- ----- ----- ----- ----- ----- ----- ----- -----.
<신 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신 설>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참고2 연대납세의무

□ 연대납세의무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및 민법 제413조 등)

- **(연대납세의무)**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
 - **(공유물 등)** 공유물 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등은 공유자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법§44①)
 - **(분할법인 등)**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 분할법인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법§44②)
 - **(분할신설법인 등)**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 (민법 준용)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에서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 준용

□ 연대납세의무 적용

- (고지·독촉)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납세의 고지와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법§28②)
- (징수) 연대납세의무자는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 없이 조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대법원 99두2222 판결)

< 민 법 >

-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법§50②)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판결에 의하여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 既 신고세액이 세법에 따른 결정세액 초과시 과세관청에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 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추가

□ 개정 내용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법§50②)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을 포함

❖ 경정청구 제도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대상	신고세목	신고세목, 보통징수세목
청구사유	납세자가 지방세 신고시 과세표준 세액 등 과다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 신고시 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시 과세표준·세액의 근거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시
청구기간	신고기한부터 5년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 적용 요령

- ‘23.1.1. 이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 분부터 이 법 시행일부 9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 ----- ----- ----- ----- ----- -----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u>소송</u> 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 ----- ----- ----- <u>제7장에 따른 심판 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u>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7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 (안 법제56)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특별징수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 (좌 동) ○ '25.1.1. 및 '26.1.1.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정 내용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법§56)
- 국세는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20~’21년)
 - 지방세도 금융세제 개편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개정
- ※ 국세 및 지방세 모두 금융투자소득 규정에 대한 시행시기를 '25.1.1.로 규정
- ‘25년 및 ’26년 과세기간 동안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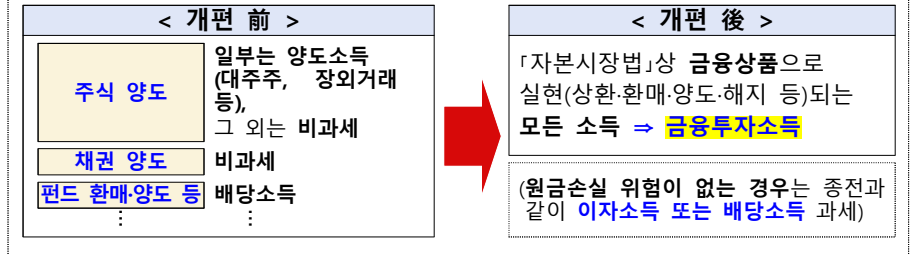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② (생략)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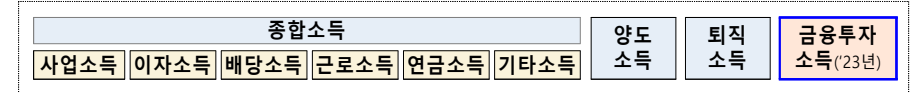
참고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국세) 개요 ('25년 시행예정)

◆ (도입배경) 금융상품별로 과세체계가 상이하고, 상품별 이익·손실이 통산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과세형평 및 합리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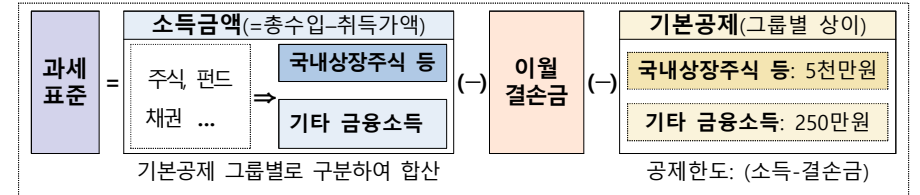


□ 과세체계 주요 내용

○ (소득) 기존 종합·퇴직·양도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신설하여 **별도과세**(3~4분류)



○ (과세표준) 모든 금융상품 **소득금액** 합산, **결손금 공제**(5년) 후 **기본공제** 적용



○ (세율·징수방법)

세율	20% (3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한하여 25%)
징수방법	□ 원천징수 □ 예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6·12월말)
예정신고	▶ 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았거나, ② 원천징수 제외되는 소득 → 납세자가 직접 예정신고·납부(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	▶ 추가납부·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총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 납세자가 확정신고·납부(다음해 5월)

8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안 법§63② 신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 환급금 권리의 양도 ☐ 납세자는 타인에게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지급(영§44②)	☐ 환급금 권리의 양도와 <u>충당</u> ☐ (좌 동) ☐ 지자체장은 환급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u>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u> 양수인에게 지급

□ 개정 내용

- 지자체장은 납세자(양도인)의 환급세액에서 지방세관계법상 공제세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음(법§60)
-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환급금 양도요구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양도할 수 있도록 충당 후 양도 규정 신설

< 지방세 환급금 양도 절차 >

개정 전	지방세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신청서 제출(영§44①)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양도(영§44②)	지자체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영§44③)
개정 후	지방세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요구서 제출(영§44①)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고 환급금을 양도(영§44②)	(삭제)

□ 적용 요령

- 이 법 시행 이후(‘23.6.1.)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u><신 설></u>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채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 ----- ----- <u>요구서</u>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

○ 개정 전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 화 번 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즉시 양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양도신청서가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 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구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 화 번 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법§83④ 등 신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세무조사 연기신청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기신청 사유 소멸 후 조사개시 ☐ (좌 등) ☐ 조사개시 근거 및 절차 마련 * (사유) ①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 (절차) 조사개시 5일전까지 통보 등

□ 개정 내용

- 천재지변·질병 등 사유*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법§83②)
 - *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질병·중상해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를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법§83④)
 -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자체장은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연기사유가 소멸한 사실, 조사기간 등을 통보(법§83⑤)
 - 다만,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단서 규정
 - *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법§83①)

□ 적용 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1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연기신청의 승인 -----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신 설>

⑥ -----
-----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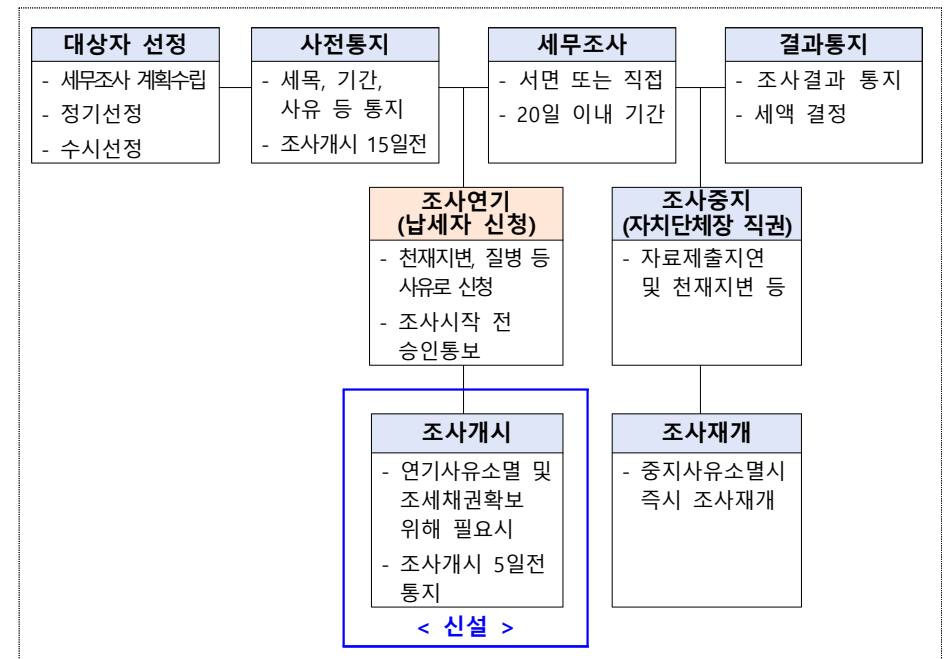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3.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참고 2 지방세 세무조사 개요 및 절차

□ 세무조사 개요

- (정의) 지자체장의 명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질문·검사를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는 활동**
※ 지방세 과세요건 및 신고사항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자료수집 절차(행정조사)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등
- (조사대상)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신고·기장 등 납세협력 의무 미이행,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혐의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관계인 등
- (조사방법) 법령 또는 지자체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 세무조사 절차 흐름도



10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법§80의2, 영§55의4 신설 등)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 조사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확대 예외사유는 시행령으로 위임 ☐ 조사범위 확대시 <u>납세자에게 통지</u>

□ 개정 내용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1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함(법§83①)
- **조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되도록, 조사 진행 중에는 사전 통지된 **조사범위의 확대를 제한**(법§80의2)
 -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조사범위 확대**를 허용하되,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예외적 사유** 규정(영§52의2①)
 - 다른 과세기간·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에도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는 등 권리보호 절차 마련

□ 적용 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1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u>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u>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u>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u>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u>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1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법§89)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불복청구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	☐ 불복청구 대상 <u>확대</u> ☐ (좌동) ☐ 이해관계인 추가 -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 물적납세의무자** - 보증인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중증

□ 개정 내용

- 기본법은 **불복청구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법§89)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하여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을 포함
- * 청산인 등(기본법§45), 출자자(기본법§46), 법인(기본법§47), 사업양수인(기본법§48)
 ** 신탁재산 수탁자(지방세법§119조의2), 양도담보권자(기본법§75), 중증(기본법§75)

□ 적용 요령

- ‘23.1.1.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청구대상) ①·② (생략)	제89조(청구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1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법§91)

□ 개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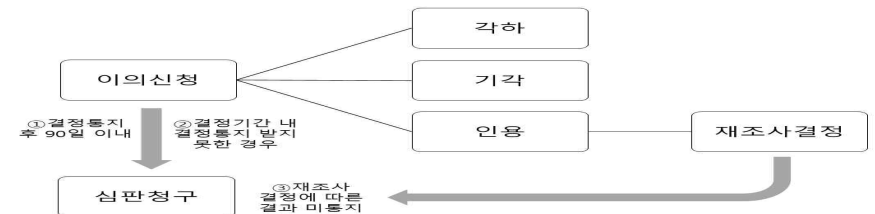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청구기간 ☐ (좌 동) ☐ (좌 동)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 가능

□ 개정 내용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가능(법§91②)
 -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90일)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 가능토록 규정 신설

*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토록 함



□ 적용 요령

-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1조(심판청구) ① (생략)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3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법§96)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이의신청 결정유형 ☐ 부적합 : 각하 ☐ 이유없음 : 기각 ☐ 이유있음 : 인용 -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 필요시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 (좌동) ☐ (좌동) ☐ (좌동) - 원처분 유지 사유 신설

□ 개정 내용

-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만, 처분의 취소 등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 필요시 재조사 결정(법§96⑤)
-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유 명확화

* 과세관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납세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비협조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6조(결정 등) ① ~ ④ (생략)	제96조(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 ----- --.
⑥·⑦ (생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1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법§146, 법§151조의2)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포상금 지급대상 등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	☐ 포상금 지급기준 등 근거규정 ☐ (좌동) ☐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

□ 개정 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지자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법§146)
- 지방세 체납 등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법§159)
- 「지방자치법」이 '21.1.12. 전부개정되어' '22.1.13.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 및 제176조 제1항으로 인용조문 정비

참고 1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⑦ (생략)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 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 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생략)	⑧ ----- ----- ----- -----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 ----- ----- ----- ⑨ (현행과 같음)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 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 다. ② (생략)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 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의 설립) ① ----- ----- ----- ----- ----- ----- -----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15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및 운영 효율화(법§147, 영§86의2)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좌동)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 시가인정액, 세수추계 등 추가

□ 개정 내용

- 자치단체는 지방세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법§147)
- 지방세·재정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사항 추가
 - 고액·상습체납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에 대해
감치 신청(지자체장→검사) (징수법§11의4, '22.7.28 시행)
 - 시가인정액(지방세법) 관련 감정가액 부적정 여부, 시가불인정감정
기관 지정여부 등의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지방세법 시행령 §14①, ⑤, ⑥, §14의3③, '23.1.1 시행)
 -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로 세수추계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방재정법 시행령 §49의2 개정 예정)
- *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잔, 세목별 차이분석 및 개선사항 명시
-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제·재정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내 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내 분과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토록 규정

참고 1 개정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 ----- ----- -----.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 ----- ----- -----, ----- 제1항제9호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 감치제도 개요

- (내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구인(拘引)
- (대상)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5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
 - ※ 지방세 감치 검토대상자('21.12.31.) : 490명
-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시행령 제19조의2 ('22.7.28시행)
- (도입사례) 국세징수법(제115조), 관세법(제116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 민사집행법(제68조), 가사소송법(제67조) 등 운영 중

참고 감치절차 및 특징

- (절차) 자치단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 감치 신청(지자체장→검사) ⇒ 감치 청구(검사→법원) ⇒ 법원 결정 ⇒ 감치 집행(검사, 사법경찰관리)
- 절차 상 특징
 - 감치 신청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부여
 - 감치에 처한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음
 - 감치 집행중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감치 집행 종료

참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11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 ② ~ ⑧ (생략)

참고 3 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 시가인정액 제도 개요

- (내용) 부동산 등의 무상취득시 과세표준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
 - * 취득일로부터 6월내 거래된 해당물건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14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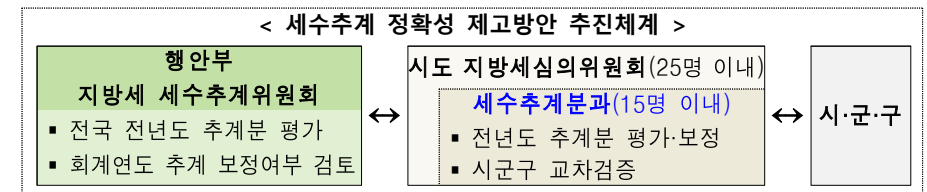
□ 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① 감정가액 부적정 심의(지방세법 시행령 §14①)	
▪ (내용) 감정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 심의	
▪ (대상)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② 납세자의 시가인정액 심의요청 시 심의(지방세법 시행령 §14⑤·⑥)	
▪ (내용) 매매가액 등이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으나, 납세자가 시가인정액에 대한 심의 요청시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여부 심의	
* 취득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 취득일 전 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 (대상) 시가인정액 심의요청 대상이 취득일 전 2년 이내이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 취득일을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한 매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결정 가능	
③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심의(지방세법 시행령 §14의3③)	
▪ (내용) 원래 감정가액이 자치단체장이 타 감정기관에 의뢰·평가한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여부 심의	
▪ (지정기간) 부실감정의 고의성과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 정도 등을 고려,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 예시) 감정가액이 70~80% 미만(6개월내), 60~70% 미만(9개월내), 60% 미만(1년내 범위)	

참고 4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수추계 분과

□ 세수추계 분과 제도 개요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①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①항
- (구성 및 규모)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분과(15명 내외)' 구성
- (주요기능)
 -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의무 첨부서류*인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에 대한 심의
 - * 지방재정법 시행령 §49의2 개정 추진 예정
 - **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세목별 차이분석 및 개선사항 명시
 -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시·도세 세수추계 및 시·군·구 교차검증, 직전년도 세수추계 결과 평가 후 개선안 논의



< 참고 : 세수추계 관련 협업 프로세스 구축(안) >

	합동 검증·환류 (상반기)	세수추계위원회 운영(행안부) (6월)	자치단체 추계 (8월, 10월)	시도 세수추계분과 운영(자치단체) (9월)
회계연도(Y_t) 추계분 (전년 Y _{t-1} 추계분)	▪ 징수진도를 점검 ▪ 행안부·광역 합동 현장점검(4월) ▪ 매뉴얼 보완(5월)	▪ 전년도 추계분 평가 ▪ 행안부 지침교육(7월)	▪ 추계 보정	▪ 전년도 세수추계 피드백 및 시군구 교차검증
익년도(Y_{t+1}) 추계분 (금년 Y _t 추계분)	▪ 우수사례 발굴 ▪ 매뉴얼 보완(5월)	▪ 제도개선 검토	▪ 1차(8월)·2차(10월)	▪ 시군구 교차검증

**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내용**

1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안 시행령§2③,④)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특수관계인의 범위 ○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연관관계 ○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1차적 지배 본인 등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신 설> -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 본인을 1차적 지배 친족관계 등이 본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② 본인이 1차적 지배 본인 등(①의 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신 설> <신 설> □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영리법인 -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좌동) ○ (좌동) ○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좌동) ② 2차적 지배 본인 등(①의 관계에 있는 법인A 포함)이 법인(B)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 (좌동) ② (좌동) ③ 2차적 지배 본인 등(①,②의 관계에 있는 법인A)이 법인(B)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④ 기업집단 □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영리법인 -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 개정 내용

- (특수관계인)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규정(영§2)
 - (친족관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이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등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 * 법인의 박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영§2④)
-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 범위와 경영지배로 인정하는 출자비율을 국세와 일치시킴
 - 2차적 지배관계(본인 등이 지배하는 법인(A)가 법인(B)를 지배하는 경우) 및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 및 임원을 특수관계인에 포함

개정 전		개정 후	
본인이 개인	본인이 법인	본인이 개인	본인이 법인
1차적 지배*	본인을 1차적 지배 본인이 1차적 지배	1차적 지배 2차적 지배**	본인을 1차적 지배 본인이 1차적 지배 2차적 지배 기업집단

* (1차적 지배) 본인 및 친족관계 등인 자가 법인(A)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 (2차적 지배) 본인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A)가 법인(B)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 영리법인의 경영지배로 인정하는 출자비율 하향(100분의 30)

개정 전		개정 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30이상

참고 1 개정 조문안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관계(이하 “경 영지배관계”라 한다)를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 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 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 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 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나. (생략) <신설>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 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

<신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자한 경우
나. (생략)
2. (생략)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
열회사 및 그 임원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
1. -----
가. -----
----- 100분의 30 ----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참고2 국세·지방세 특수관계인 비교

□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 범위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u>규정 없음</u>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u>규정 없음</u> - <u>규정 없음</u>

□ 경영지배관계로 보는 지분을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④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u>100분의 30</u>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 재산만 해당한다)의 <u>100분의 30</u>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u>100분의 50</u>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 재산만 해당한다)의 <u>100분의 30</u>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2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요건 재설계(영§24)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요건 ☐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제외 법인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의 주권상장법인 ☐ 과점주주 범위 - 특수관계인 전체	☐ 납세의무 승계 요건 합리화 ☐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제외 법인 - (좌동) - 코스닥위원회가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코스닥)의 주권상장법인 추가 ☐ 과점주주 범위 지정 -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이전과 동일한 과점주주 범위가 유지되도록 일부 지정

□ 개정 내용

- ①**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②**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부담(법§46)
- ① (**법인**) 자본금 규모, 공시의무 등 **상장법인에 대한 견제장치**를 고려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제외**토록 추가(영§24①)
- ②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영§2)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부담 확대 방지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 이전과 동일한 과점주주 범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점주주 범위 조정

□ 적용 요령

- ‘23.1.1.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 ----- 다 음 각 호의 증권시장----- -----.
<신 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신 설>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 ----- 다음 각 호----- -----.
<신 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3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영§51)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 전체	☐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이전과 동일한 범위가 유지되도록 일부 지정

□ 개정 내용

- 경매·공매 등으로 재산을 매각하여 지자채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과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 등 설정계약을 하는 경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법§71④)
- *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예시:고지서 발송일)
- ※ 체납 처분에 앞서 전세권 설정을 하여 다시 경매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영§2)에 따른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범위 제한

□ 적용 요령

- ‘23.1.1.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저당권 등의 설정계약, 가등기계약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 ----- 제24조제2항 각 호 ----- -----.

4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및 전자송달 철회 예외사유 신설 (영§14)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전자송달 신청 시 기재사항 ○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전자송달 철회로 보는 사유 ○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 미확인·미열람시 *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서, 이의신청 등 결정서, 신고안내문	□ 전자송달 신청 시 기재사항 ○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 전자송달 철회 간주 사유의 예외 신설 ○ (예외)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세액을 납기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

□ 개정 내용

- 납세자가 전자송달 신청·철회시 작성 서식에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
 -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기재하는 납세자 연락처나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송달 관련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 목적 명시
-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열람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
 -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를 확인·열람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 전액을 납기 내 납부하는 경우는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신설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	2. ----- ----- ----- ----- -----, 다

설>

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
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전

지방세 전자송달 [] 신청서 / [] 철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신청 서류	납세고지서	재산세 [] 자동차세 []	
		개인분 주민세 [] 면허분 등록면허세 []	
	기타	납부통지서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기타 []	
철회사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전자송달 신청은 별지 제56호 및 제58호서식을 사
용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 후

지방세 전자송달 [] 신청서 / [] 철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신청 서류	납세고지서	재산세 []	자동차세 []
	기타	개인분 주민세 []	면허분 등록면허세 []
		납부통지서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기타 []	

철회사유	
------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전자송달 신청의 경우는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규정 인용조문 정비 (영§77)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 ○ 법 제139조 제2항 및 제4항, 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을 신고 하려는 자 * (제2항)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제4항)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재산의 사용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신고 (제6항)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20.12.29. 삭제)	☐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 ○ 법 제139조 제2항 및 제4항, 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

□ 개정 내용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토록 규정
 - 법 제139조 제2항 전단, 4항, 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
- 법 제139조 제6항 규정 삭제*(’20.12.29)에 따라 해당 시행령 부분 삭제
 -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신고하는 규정(제139조 제6항) 삭제

참고 1

개정 조문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 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 전 단 또는 -- 제4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 2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 12. 29.>

6 외국인 관련 제출 과세자료 확대 등(영 별표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련 제출 과세자료 제출 ○ (제출범위) 내국인의 출입국 정보에 관한 과세자료 ○ (제출시기) 외국인 및 재외동포 거소 관련 자료 월1회(매월 5일) 제출	□ 외국인 관련 제출 과세자료 확대 ○ (제출범위) <u>외국인</u> 의 출입국 정보에 관한 과세자료 <u>추가</u> ○ (제출시기) 외국인 및 재외동포 거소 관련 자료 <u>매일</u> 제출

□ 개정 내용

- 외국인에 대한 과세·채납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정보 및 거소 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범위 확대 및 제출주기 단축
 - (제출범위) ‘국민의 출입국 자료’만 제공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자료(수시제출)’ 추가
 - (제출시기)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시기를 월 1회(매월 5일) → 매일로 확대

< 과세자료 제출 관련 기타 개정사항(영 별표 3) >

-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에서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를 삭제함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별표3의 과세자료에서 삭제
- 「법무사법」개정(‘16.2.3.)에 따라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사항 반영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 되었으므로(‘17.1.7.) 해당 사항 반영
-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소관부처 변경(국토부 → 환경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기관 변경

참고

개정 조문안

번호	현행			개정안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시기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시기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매년 1월 5일	(삭제)		
103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159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262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법무부	매년 8월 5일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 심사 및 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법무부	매월 5일 수시
26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 목적에 필요한 정보	법무부	매월 5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 목적에 필요한 정보	법무부	매일
27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매년 1월 5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매년 1월 5일
3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법무부	매월 5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법무부	매일

7 경매로 인한 취득세 관련 제출 과세자료 확대(영 별표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경매로 인한 취득세 관련 과세자료 ☐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 (신 설)	☐ 경매로 인한 취득세 관련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 제출 항목 추가(채권금액, 배당 순위 등) ☐ 매각물건명세서

□ 개정 내용

- 경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법원이 **경매 배당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도록 규정(영 별표3)
 - * 법원이 배당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사건번호, 배당일, 배당액 등이 기재
 - ※ (필요성)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유치권 등 낙찰자가 인수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해 배당표 활용
- 현행 '배당표' 자료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채권금액·배당순위 등 추가토록 개정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3

번호	현행			개정안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시기	과세자료	제출기관	제출시기
302	(신 설)			「민사집행법」 제 105조에 따른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매월 5일

8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별지 서식제10호)

□ 개정개요

※ 권익위 권고('22.3.)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처리기준 ☐ (규정없음)	☐ 지방세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 공시송달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중 일부를 특수문자로 처리하되, ☐ 납세자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시 본인 확인방법 안내

□ 개정 내용

- 고지서 등을 수령할 납세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주요 내용을 지방세정보통신망, 지자체 게시판 및 관보 등에 공고(법§33)
 - * (대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공시송달시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서류의 송달지, 서류 명칭 및 서류 내용을 기재토록 규정(칙 별지 제10호)
- 공시송달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공개내용·범위·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있어,
 - 개인정보 보호와 공시송달을 통한 효율적 납세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성명·주소 중 일정 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하는 기준 마련
 - * (예시) 홍길동 → 홍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16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
- 한편, 납세자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시 본인 확인방법 안내

참고 1 개정 조문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 개정 전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서류의 송달지: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_____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 후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서류의 송달지: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문자 1개(4글자
 이상인 경우 2개)와 서류의 송달지 중 상세주소를 특수문자(*)로 처리하며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게시하지 않는다
6. 송달 대상자가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인지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
 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방법을 안내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